

瑞山市女性政策審議委員會構成與運營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總務委員會
2000. 6. 9

1. 審 查 經 過

- 가. 發議日字：2000. 5. 23
- 나. 發議者：明魯熙 議員外 10人
- 다. 回附日字：2000. 5. 25
- 라. 上程日字：2000. 6. 9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明魯熙 議員)

가. 提案理由

- 현 사회가 전문화·세계화됨에 따라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및 역할증대가 요구됨에 따라
- 여성관련시책의 기본계획과 주요사업을 종합적으로 건의·심의·조정하고, 서산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 여성복지시책의 발전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위원회의 구성목적을 정하고 위원회에 건의·심의·자문할 수 있는 기능을 정함(안 제1조, 제2조).

-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시의회 의원 2인과 기획감사담당관, 사회여성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안 제3조).
- 위원회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회의·심의에 필요한 여성정책의 추진계획 및 실적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서산시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함으로써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시책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임.
- 조례안 검토결과 본 조례안과 같이 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생략

5. 討論 및 少數意見 : 없었음

6. 審查結果 : 원안대로 가결

의안번호	제 153 호
의 결	2000. . .
년 월 일	(제 회)

서산시여성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발 의 자	명노회 의원외 10 인
발의년월일	2000. 5 . 23 .

서산시여성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153
----------	-----

발의년월일 : 2000. 5 . 23 .

발 의 자 : 명노회 의원외 10인

1. 재정이유

사회가 고도로 전문화·세계화 되어감에 따라 여성의 역할증대와 사회참여가 요구되어 여성관련 시책의 기본계획 및 사회참여 확대·여성지위향상등 여성문제에 관한 주요사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 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여성복지시책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확고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골자

가. 위원회의 구성목적은 여성의 지위향상과·사회적참여 및 복지증진에 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건의·심의하고 서산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함임(안 제1조).

나.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사항을 건의·심의·자문함(안 제2조).

- 여성문제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여성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 여성능력 개발 증대에 관한 사항
- 기타 여성문제에 관한 사항

다.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3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함.

-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사회여성복지과장, 시의회 의원 2인과 여성 문제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

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안 제4조).

마.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해촉할 수 있음(안 제5조).

-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치 아니할 때
- 위원의 품위 손상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바.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됨(안 제7조).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음.

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여성 복지담당으로 함(안제8조).

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등 실비보상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

서산시여성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등 여성문제를 종합적으로 건의·심의하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산시여성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이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건의·심의·자문한다.

1. 여성문제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4. 여성능력 개발 증대에 관한 사항
5. 기타 여성문제에 관한 주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사회여성복지과장, 시의회 의원 2인과 여성문제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치 아니할 때
2. 위원의 품위 손상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여성복지담당으로 한다.

제9조(자료제출) 위원회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여성정책의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수당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서산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